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7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민병덕
이정현 · 강준현 · 한병도
윤준병 · 박지원 · 서영교
박정현 · 진성준 · 최혁진
한민수 · 안호영 · 김남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 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 · 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 ·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 · 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국가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현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조성, 실질적 권리구제 실현, 그리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현장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기업은 기업활동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인권 및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함(안 제4조).

- 라. 제18조를 제외한 제2장의 규정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 마.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기본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책임자들은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 운영과 감독을 담당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기업은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함(안 제10조).
- 사.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평가하여야 하고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신고받은 사항의 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을 식별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기업은 인권환경위험에 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인권환경실사의 결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 차.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위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19조).

카.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통보한 경우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관리할 수 있음(안 제28조).

파.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31조).

하.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정책 및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평가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국가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현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조성, 실질적 권리구제 실현, 그리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국내에 본점을 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기업활동"이란 기업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급망"이란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간접적 경제관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인권환경위험"이란 기업활동 또는 공급망 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인권환경위험으로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기업활동 또는 공급망 내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위험을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7.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의 기본의무) ① 기업은 기업활동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인권 및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산업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권환경실사 및 권리구제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제외한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② 제1항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인권환경실사 등

제7조(인권환경실사 정책의 수립 등)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기본방

향, 목표, 이행절차 및 조직체계 등을 포함한 정책(이하 “인권환경실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및 역할) ① 경영책임자등은 인권환경실사정책의 수립,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인권환경위험 식별·평가,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및 환류 등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 운영과 감독을 담당한다.

②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운영 및 감독을 게을리하여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제31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업은 이사회 내에 인권환경실사 전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은 그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7조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정책 및 제14조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기업은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기구는 접근성 및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및 상담의 남용 방지 및 신고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0조에 따른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신고한 사항의 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 위험을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 해당 위험의 심각성 및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과정이 공급망 내 타 기업과 연관된 경우, 기업은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대책의 평가 및 환류) 기업은 제12조에 따른 인권환경위험에 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사보고서의 작성)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결과, 인권환경위

험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이행, 평가 및 개선조치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의무) ①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정책, 경영책임자등의 명단, 인권환경실사 결과, 실사보고서, 개선조치, 분쟁조정 결과 등 이 법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 범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및 청구권) ① 국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업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①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전 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반영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부의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 구축, 교육·컨설팅, 중소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권환경실사 이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 제도 실시, 우수기업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위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조사, 분쟁의 조정, 권고,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운영 및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제기) ①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제기된 이의제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와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조사)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이의제기 대상 기업(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제26조(사전권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 결과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그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조사 결과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위원회 결정의 집행 및 효력) ①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통보한 경우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보고 및 평가) ① 위원회는 매년 인권환경실사 제도의 운영현황, 분쟁조정 및 시정명령 이행 실적, 제도개선 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년마다 제도의 실효성 및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책임)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피해자 지원) 정부는 인권환경위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의료, 심리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정책 및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평가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할 인권환경실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